

##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
----------	-----

제출년월일 : 2006. . .

제출자 : 영주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일부가 개정·시행(2006. 1. 1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할 연령 및 주민수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주민감사청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 (제2조)
-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할 주민의 수를 200인이상에서 150명이상으로 개정 (제2조)

### 3. 개정조례안 : 볼임

### 4. 신·구 대비표 : 볼임

### 5.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1부

##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영주시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영주시와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
연서하여야 하는 <u>20세이상</u> 주민의 수는 <u>200인</u> 이상으로 한다.	..... <u>19세이상</u> <u>주민의 수는 150인</u> ..... ....	

## (제 101회 총무 제1차)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⑤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⑦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내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⑧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⑨ 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1.27, 2006.1.11>

- 6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2005. 9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및 제도보완 등 규정정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함

### I. 지방자치법 개정개요

#### 1.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내용 ('06.1.1 시행)

#####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

- ▶ 감사청구 주민 수를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
- ▶ 감사청구 대상기간을 2년 이내로 한정(신설)
- ▶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도 감사청구 가능
- ▶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감사결과 조치요구내용, 조치결과 통지·공표(신설)

##### ■ 주민소송제도 도입(法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 ▶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주민소송 제기(필수적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채택,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 주민소송 남발방지를 위해 동일사항의 별도 소송제기 불가, 소송 제기 주민의 자격상실시 6개월 이내 소송절차 수계 가능
- ▶ 주민소송 승소 주민에 대한 변호사 비용 실비보상 청구 가능

## 2.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05.8.5 공포, '06.1.1 시행)

#### ■ 부처간 협조규정 신설(수 제10조의14제2항)

-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타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 여부확인 및 감사결과자료의 협조 요청권을 부여
  -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응할 의무규정

#### ■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 법정화(수 제10조의17)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시민단체 추천자,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부교수 이상, 기타 감사업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
  - ※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연임 가능)
-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구분하여 명시
  - 청구요건 심사,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등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심의회에 관계인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 II.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및 제도보완 추진

### 1.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 ※ '05.12.31까지(법정 기한)

- 감사청구 주민 수를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조례 개정 조치
  - 주민참여행정의 제도도입 취지와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감사청구인 수는 행자부의 기존 권고안('02.1월, '03.11월) 유지  
⇒ 광역자치단체 300명内外, 기초자치단체 200명内外로 조례개정(권고)
  -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하여는, 주민소송제 시행 이전 조례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서울특별시장)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2.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외부전문가 영입

- 위촉직 위원(소속 공무원 이외의 외부 위원)은 법조인,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시민단체 추천자,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
  -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촉위원이 반드시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유념

### **3.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추진**

- 자치단체별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메뉴를 활용  
주민감사청구요령 등을 게재(내용 별첨 2)
- 민원봉사실 등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홍보물 비치